제247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 2019. 1. 9.(수) 11: 00 행 정 복 지 위 원 회

검 토 보 고

- 1.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2.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3.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행정복지위원회

- 예신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○ 저출산 인구 절벽시대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예산군 만들기 방안 모색과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원내용(안 제3조)
 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10조에 따라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및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.
- 지원대상 및 신청 등(안 제4조~제6조)
 - 지원대상 :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예산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(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)
 - 수업료 등 지원계획 수립 및 필요 예산 확보
 - 지원대상의 학생 현황 및 금액 파악, 자격 확인 후 제출 및 지급
- 자격 변동 및 사후관리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 -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 상실, 학생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변동 시통보(교육감 경유) 및 수업료 등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 반환 (학교장→군수)

- 매분기별 지원금 지급 현황 및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자료 제출(교육감 경유/ 학교장→군수)
- 집행 잔액 발생 시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 반납(학교장→군수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」 제23조
- 「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」제10조
- 나. 예산조치 : 2019년도 본예산에 군비 814,233천원 편성 (도비 814,233천원은 교육청에 직접지원)

다. 기 타

- 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2) 입법예고 : 2018. 11. 28. ~ 12. 18.(20일간)
 - 기간 중 의견 : 없음
- 3) 비용추계서 : [붙임2]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서: 【붙임3】

4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과「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」에 근거하여, 수업료 등을 지원 받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에게 군과 도 및 교육지원청에서 이를 지원(1~2학년은 군과 도에서, 3학년은 교육지원청에서)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.

- 예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,
- 국·도비 보조 및 대응투자에 따른 군비부담액 제외 문구를 명시 함으로써 교육경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과 문법 문맥 등에 맞게 수정(안 제1조~제5조)
 -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→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8항
 -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 제4조 →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
 - 각급학교 → 예산군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(이하 "각급학 교"라 한다)
 - 예산의 범위에서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의 대응투자는 특별지원 할 수 있다. → 국.도비 보조 및 대응투자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제 외한다.

- 예산교육장 →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
- 한차례만 연임 → 연임
-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. → 평생교육 업무팀장으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제11조제8항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
 - 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- 2) 입법예고 : 2018. 11. 28. ~ 12. 18.(20일간)
 - 기간 중 의견 : 없음
 - 3) 비용추계서 : 【붙임2】
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서: 【붙임3】

4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(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)과 문법 문맥 등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,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선진 장사문화에 대비해 신설되는 가족평장묘 및 12위형 가족 봉안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
-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모의 집 중도 해지(개장) 시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규정 신설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족평장묘 정의 추가(안 제2조)
- 묘지 등의 사용료 등 별표 2에 12위형 가족봉안묘 및 가족평장 묘 추가(안 제11조 별표2)
- 추모의 집 사용료 등 반환규정 신설(안 제11조의2)

3. │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23조
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함

다. 기 타

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2) 입법예고 : 2018. 12. 12. ~ 12. 24.(13일간)

- 기간 중 의견 :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【붙임 2】

4) 성별영향분석평가서: 【붙임 3】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선진 장사문화에 대비해 신설되는 가족평장묘 및 12위형 가족봉안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추모의 집 중도 해지(개장) 시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규정을 신설 민원을 사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,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.